

# 교직원 보수 규정

2001년 03월 01일 제정 2016년 04월 07일 개정 2016년 07월 15일 개정 2018년 03월 01일 개정 2019년 03월 10일 개정  
2022년 03월 01일 개정 2024년 02월 05일 개정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신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교원 및 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교 교·직원의 급여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봉급”이라 함은 교·직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 “보수”라 함은 봉급과 강사료 또는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포함하는 액을 말한다.
- “초임급”이라 함은 최초로 임용된 때의 직급 및 호봉에 대하여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따라 본 대학교 제 규정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 “보수일할계산”이라 함은 해당 월의 보수를 월의 대소에 불구하고 30분의 1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의 책정)** ① 교직원의 봉급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및 타 대학 보수수준을 참고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15.><개정 2018.02.05.>

② 법인 정관 제93조 제2항 제1호 다목의 계약으로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조교수의 경우는 계약에 의해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은 본 규정에서 정한 연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여 따로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8.02.05.>

**제5조(직원의 시보 임용기간)** 직원의 시보 임용기간 중에는 각종 수당의 지급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7.15.>

**제6조(초임급 및 승급)** 교·직원의 초임급 및 승급은 각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7조(전임시의 초임급)** 직종을 달리하는 전임에 있어서는 경력 등을 참작하여 총장이 초임급을 정한다.

**제8조(승진시의 초임급)** ① 교원의 경우 잔여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에는 호봉확정시 산입하여 재확정한다.  
② 직원의 경우 직원인사규정에 의거하여 초임급을 책정하며, 잔여월수가 12개월 이상일 때 호봉확정시 산입하여 재확정 한다.

**제9조(복직자의 초임급)** 퇴직 또는 휴직한 교·직원이 복직할 경우의 직급 및 호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 또는 휴직 당시의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한다.

### 제3장 보수지급

**제10조(보수지급일)** 보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보수 지급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보수지급일로 한다. <개정 2019.03.01.>

**제11조(보수의 계산)** ① 보수의 계산은 임용발령일자가 월초 5일 이내인 경우는 당월 분 전액을 지급하고 6일 이후는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퇴직 발령일이 그달 5일전까지는 월 보수의 반액, 6일 이후면 월 보수액의 전액을 지불한다. (단,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여 지불한다)  
③ 보수의 계산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보수 일할 계산에서 “월” 미만의 액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12조(봉급의 감액)** 복무규정이 규정하는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 1일에 대하여 보수일액의 3분의 2를 감하여 지급한다. 단, 무단결근일 경우는 보수일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3조(잔무처리 기간 중의 보수)** 해직된 교·직원이 잔무처리를 위한 잔무를 계속

할 때에는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과 같은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겸직보수)** 교·직원의 본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무할 때에는 겸직에 대한 보수는 지급하지 아니 하되, 겸직의 보수가 본직의 보수보다 많을 때에는 겸직의 보수를 지급한다. 보직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5조(휴직기간 중의 보수)** 휴직기간 중에 보수지급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규정에 의한다.

## 제4장 상여수당

**제16조(정근수당)** ① 교·직원에게는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② 정근수당의 지급 및 계산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효도휴가비)** ① 교·직원의 효도휴가비는 매 년도 월봉급액의 120%를 지급한다.

② 효도휴가비의 지급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 제5장 수 당

**제16조(보직 및 직책수당)** ① 교원이 본직 이외에 보직에 보임될 때에는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② 직원이 보직에 보임될 때 보직수당을 지급한다.

③ 교·직원이 보직에 보임될 때 총장이 직책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직위에 임용된 때에는 직책수당을 지급한다.

④ 보직 및 직책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6조2(직무대리 보직수당)** ① 직무대리로 인한 보직수당의 대상은 총장에 의한 보직 임명을 받은 자로 그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② 보직자의 유고내용이 유학, 출장, 휴가 등 신상의 변동에 의한 경우 그 직무대리로 임명받은 자에게 보직수당 100%(유고자는 미지급)를 지급한다.

③ 유고의 내용이 공석으로 인한 보직의 직무대리일 때에는 전항의 기간에 관계

없이 수당 전액을 지급한다.

**제17조(연구수당)** ① 교원에 대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한다.

② 연구수당은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8조(학사지도비)** ① 교원에 대하여 학사지도비를 지급한다.

② 학사지도비는 월정액으로 지급하되,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이를 정한다.

**제19조(기술업무수당)** ① 직원에 대하여는 기술업무수당(자격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기술업무수당 지급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의2(특별업무수당)** ① 교직원(특별교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특수업무수당은 총장이 정하는 특수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2.03.01.]

**제19조의3(입시 수당)** 입시업무를 담당(또는 지원)하는 교직원에게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 입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5.]

**제19조의4(기타 수당)** 이 규정이 정하는 수당 이외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나 자격, 특별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별도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2.05.]

**제20조(가족수당)** ① 교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② 가족수당의 지급 및 계산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자녀학비 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교·직원에게는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자녀학비 보조수당은 매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당 규정에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급양비)** ① 교직원에게는 급양비를 지급한다.

② 급양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3조(직급보조비)** ① 교직원에게는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② 직급보조비의 지급 및 계산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시간외 근무수당)** ① 직원이 시간외 근무를 한 때에는 복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방학기간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 및 계산방법은 공무원 수당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교직원 보수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 이후 임용부터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24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